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98
----------	-------

발의연월일 : 2025. 7. 21.

발 의 자 : 유상범 · 권영세 · 조배숙
추경호 · 구자근 · 김선교
김은혜 · 장동혁 · 강명구
곽규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주요 해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투자자 역시 배당보다는 시세차익에 집중하는 구조로 자본시장의 장기투자 및 가치투자를 유도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고배당성향법인의 경우 그 액수에 상관없이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91조의25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의2제1항 중 “제89조의2제1항 및 제91조의6제4항”을 “제89조의2제1항, 제91조의6제4항 및 제91조의25제5항”으로 한다.

제2장 제9절에 제91조의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5(고배당성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성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가 해당법인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배당성향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사로서

수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일 것

2.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 총액의 평균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9

2.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4

3. 5천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20

③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성향법인 배당 명세서와 고배당성향법인 분리과세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를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배당성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① 제87조의5제5항, 제87조의6제4항, 제88조의4제11항, <u>제89조의2제1항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라</u>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각 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89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통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통보된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① ----- ----- ---- <u>제89조의2제1항, 제91조의6제4항 및 제91조의25제5항</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91조의25(고배당성향법인의 배

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성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가 해당법인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보
유주식의 배당소득은 「소득세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
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배
당성향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
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
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
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
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
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

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
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
사로서 수익을 주주 또는 출
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하
다)일 것

2.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
총액의 평균 대비 해당 사업
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
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
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
의 9

2.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인 경우: 100분의 14

3. 5천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
의 20

③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
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 에 따라 계산한다. ② ~ ⑤ (생략)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